

## 유전자 도입 자원식물 개발 연구 및 이용시 바이오안전성 확보 관리

최경화\*, 김용호, 고강석, 오경희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생태부 유해생물과

\*Tel: 032-560-7485, E-mail: choi978@me.go.kr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연구자들이 유전자를 도입하여 유전자변형 자원식물을 개발하고 이용할 경우에 법적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자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전자변형 자원식물 개발 연구와 이용 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해야할 법적 준수사항들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개발, 생산, 수입, 수출, 판매 운반 보관등) 연구와 이용 시 적용되는 사항은 수입·생산 관련 승인 및 취소 사항, 위해성 평가 및 심사관련 사항, 폐기처분 관련 사항,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와 신고 관련 사항, 표시 및 취급관리 관련 사항, 정보 보호 및 이용관련 사항, 관리·운영기록의 보존 관련 사항,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관련 사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편물을 포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 종류, 특성, 용도,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 하려는 자는 허가받거나 신고 된 시설에서 개발 또는 실험을 수행해야 하고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는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개발·생산·수입 관리대장, 운반 관리대장, 보관 관리대장,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개발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관련자들은 법 이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부처는 연구자의 연구 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과 안전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